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60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시자가 직권으로 어선·어구를 감척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공시(公示)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어선·어구의 감척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 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 통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전 해 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대통령령 제3139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5억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를 “서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5조제2항 중 “상습법위반사업자”를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제3호나목”을 “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6)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을 “실시한”으로 하며, 같은 목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 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최우수: 2점
- 나) 우수: 1점
-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 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별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별점 중 25% 초과 50% 이하
-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별점 중 25% 이하

별표 3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직전”을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별표 3 제3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있다”를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2)·3) 및 5)에 따라 경감점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가목1)·2)·6)·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누적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바, 벌점의 누산점수 산정 시에 고려하는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 폭 등의 경감 기준을 수급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 위반 사업자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물가상승 및 경제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적용 제외 대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4항)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완화(제9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벌점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별표 3 제1호 및 제3호)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거리가 멀어 원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 효과가 적은 하도급 관련 교육이수 실적, 전자입찰실적 등의 경감항목을 삭제하고, 수급사업자 권리보호 효과가 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 실적 등에 관한 경감 폭을 확대하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사실이나 수급사업자에게 입힌 피해의 자발적인 구제실적 등의 경감항목을 신설함.

<법 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 통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전 해 철

#### ●대통령령 제31394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7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임원 각”을 “임직원”으로 한다.